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연구
분과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경제의 발전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날로 전문화되고 다양화 복잡화하는 현대도시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화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의정연구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연구 분과위원회(이하 "분과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분과위원회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 판단자료 제공과 양질의 의안발의 및 민원처리를 위한 다음 사항을 조사연구 분석한다.

1. 의안의 입안 및 안건의 연구검토
2. 의정자료의 수집과 분과별 전문사항의 연구
3. 구정 주요시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연구
4.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관한 연구
5. 집단민원예방 해소에 관한 연구
6. 의원의 윤리 및 품위 유지

② 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장에 규정한 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과는 구별되며 자율적 내부적 의정연구를 위한 임의적 기구로서 기능한다.

제3조(분과위원의 의무) 분과위원은 평상시의정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으로서 청렴과 성실 의무를 다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이권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성)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분과위원회 구성후 당일 이내로 호선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의장은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토대로 의원을 분과위원회에 배정하며 소속분과를 변경할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의원은 반드시 한 분과 위원회의 위원

이 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2개의 분과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조정하고 이의 보좌를 위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회운영 간사를 둔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종류) ①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행정관리 분과위원회
2. 재정운영 분과위원회
3. 시민생활 분과위원회
4. 도시정비 분과위원회
5.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6. 의원윤리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별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6조(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통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유지등 실무를 총괄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운영 간사) ①분과위원회 운영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과 의결사항 및 관련민원을 접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건화하여 의안으로 발의한다.

②분과위원회 운영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의 자료수집의 중복을 피하고 연구자료의 효율적수집을 위하여 각 분과위원장으로 부터 자료목록을 제출받아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라고 인정할 때 의장명의로 수집, 배부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위원의 임기와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 및 자료는 분과위원장 책임하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전 까지 의장 부의장 및 분과위원에게 사전배부 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의원들의 순수한 의정연구 활동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회의 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제10조(의결의 효력 및 보고) ①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회를 구속하지 아니하며 의회 본회의 및 지방자치법 제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안심의 처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②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은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분과위원회별 주요기능

구 분 분과명	주 요 기 능	관 련 부 서
행 정 관 리 분 과 위 원 회	일반행정, 문화공보, 민방위, 국민운동, 생활체육 및 관련 민원	총 무 국 (각 실 포 함)
재 정 운 영 분 과 위 원 회	예산결산, 세입세출, 재무회계, 재산관리 및 관련 민원	재 무 국
시 민 생 활 분 과 위 원 회	보건위생, 구민복지, 청소환경, 산업물가, 소비절약, 주택임대료 및 관련 민원	시 민 국 보 건 소
도 시 정 비 분 과 위 원 회	도시계획, 토지관리, 지적, 교통, 주택,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및 관련 민원	도 시 정 비 국
도 시 건 설 분 과 위 원 회	토목, 건설, 상하수, 공원, 녹지, 재해대책 등 관련 민원	건 설 국
의 원 윤 리 분 과 위 원 회	의원의 윤리 및 품위 유지	